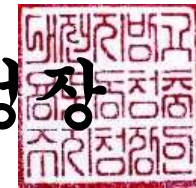
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7. 07.

###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,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 내용		
1	노○별	02.05.26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, 법 제29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,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3년간 신청 제한 * 출석 상담 불응 및 연락 두절	-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지원 신청 제한	폐문부재	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분산단4로 40 (상세 주소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07. 07.~07. 2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음성센터 류명희(Tel. 043-880-86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